

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 제외 기준 안내

1. 주거안정장학금

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 관련 비용)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

2. 지원대상

- 가.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
- 나.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- 다. 당해 학기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- 라.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- 마. 학생 및 학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- 바.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
- 사.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

3. 우선지원 기준(대학 자체 기준으로, 대학별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이 적용됨)

- 가. 1순위: 학자금지원구간(기초생활수급자 우선)
- 나. 2순위: 직전학기 백분위 상위자
- 다. 3순위: 비(非)기숙사생(2026년 8월 31일(월) 기준 기숙사 거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)

4. 지급 제외 기준

- 가. 학기 중 학적변동(제적, 휴학 등)일이 속한 월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
- 나. 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(해당 월 분)
- 다. 계절학기 수강자, 졸업유예자, 타대학학점교류생 제외
- 라.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
- 마.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